

문서번호	BSKS-3-2-01
제정일자	2012.07.26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7

2012.07.26.제정 2012.10.31.개정 2016.09.01.개정 2020.07.03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

소관부서 : 사무처

부산경상대학교(이하 '본교'로 한다.)는 "나라와 겨레에 이바지 할 참된 일꾼을 기른다"는 건학이념에 의거 개교 이래에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한다.

본교는 세계화, 정보화의 새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의 새 주역이 될 지도적 인재 양성의 책무를 다하고자 대학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대학 헌장을 제정하여 미래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대학운영의 이념적 지표로 삼고자 한다.

## 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본교의 헌장(이하 '헌장'이라 한다.)은 대학민국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진리와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건학이념을 널리 구현함으로써 본교가 추구해 나갈 목표를 설정·제시함과 아울러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내용)** 헌장은 본교의 전반적인 운영 및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다.
  - ① 건학 이념과 교육 목적
  - ② 대학 편제와 교육 시설에 관한 계획
  - ③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
  - ④ 재정에 관한 계획
  - ⑤ 인사 및 행정에 관한 계획
  - ⑥ 복지후생 및 학생 지도에 관한 계획
  - ⑦ 장·단기 발전에 관한 계획
- 제3조(기능) 헌장은 본교의 조직과 활동, 학칙 및 기타 모든 규정의 제정·개폐에 대한 이념 적 근간이 된다.

## 제 2 장 건학 이념과 교육 목적



문서번호	BSKS-3-2-01
제정일자	2012.07.26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7

- 제4조(건학이념) 본교는 '나라와 겨레에 이바지 할 참된 일꾼을 기른다'를 건학 이념으로 하며 학훈은 '참을 생각하고, 참을 찾고, 참을 행하자'로 한다.
- 제5조(교육목적) 본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 적 지식과 이론을 교수하고,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 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6조(교육목표)** 제5조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본교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10.31., 2020.09.25.>
  - ① 창의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
  - ② 소통협업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
  - ③ 실용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
  - ④ 인성소양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
  - ⑤ 자기계발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

### 제 3 장 대학 편제와 교육시설

#### 제 1 절 편제와 조직

- 제7조(구성) ① 본교는 학과와 계열을 기본 편제로 하고, 필요에 따라 보조기관 및 부속시설 등을 설립 운영한다.
  - ②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와 집행기구를 둔다.
- 제8조(행정) ①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구를 둔다.
  - ② 행정기구의 편제는 학교법인 화신학원의 정관과 본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,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극대화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.

## 제 2 절 교육시설

- 제9조(기본시설) ①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,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  - ② 새로운 기술과 자료들을 교수·학습과 교육 연구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 교육 연구용 기자재 및 교수·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.
- 제10조(지원시설) 교육 관련 지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대학과 현장 교수 · 학습의 질적



문서번호	BSKS-3-2-01
제정일자	2012.07.26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7

개선을 도모한다.

- 제11조(연구시설) 대학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소와 그 부대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활성화해 나간다.
- 제12조(기타시설) 학교 구성원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을 확충하고 관리해 나간다.

### 제 4 장 대학 학사관리 및 운영

- 제13조(학생선발) ① 본교의 건학이념 구현 및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한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전형 방안을 도입하여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하도록 한다.
  - ② 선발 방법은 공정성과 공개성,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며 시기, 유형, 단계 등을 가급적 다양화한다.
  - ③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지속적인 연구· 관리·개선 체계를 확보한다.
- 제14조(학생정원 및 관리) ① 학생정원은 사회적 요구와 전문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축 적으로 조정한다.
  - ② 편입학, 재입학 등에 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  - ③ 농어촌지역 학생이나 재외국인 등에 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정원 외로 특별 관리할 수 있다.
- 제15조(수업) ① 학기는 연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
  - ② 필요시 별도의 규정에 의거하여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를 채택할 수 있다.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학기와 야간수업, 사이버 강좌, 각종 통신 수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- 제16조(대학간 학술 교류) 교육의 세계화와 열린교육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내.외 대학 들과 다음 각 호의 학술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  - ①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 협정을 통한 교수·학생·직원의 교류
  - ② 공동 교육과정, 연구과정, 공동학위과정의 개설과 운영
  - ③ 학생들의 학점 교류 및 학점 인정제 운영
  - ④ 학술지, 논문, 연구자료 등의 학술자료 및 문화교류
  - ⑤ 도서관, 실험실 등 연구시설의 상호 이용
  - ⑥ 기타 상호협력 활동이 필요한 사항

제 5 장 재 정



문서번호	BSKS-3-2-01
제정일자	2012.07.26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7

- 제17조(재정확보방안)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학생의 등록금과 국가의 지원 및 사회의 기부금 등을 통해 확보한다.
- 제18조(대학 발전기금) ① 지역인사, 기업체, 학부모, 동문 등으로 '대학발전후위원회'를 구성하여 발전기금 조성의 프로그램 개발 및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발전기금을 적극 조성한다.
  - ② 조성된 발전기금은 학생 장학금 지급,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, 교직원 및 학생의 후생복 지 증진, 도서 확충, 학술교류, 교육 및 연구시설 설비 등의 확충에 사용한다.
- 제19조(재정의 운영 및 공개) ① 구성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, 집행, 운영한다.
  - ② 재정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교육부 지침에 따르되,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년도 결산 및 당해 연도 예산은 대학 구성원 및 외부에 공개한다.
- **제20조(추가 재원의 확보 및 운용관리)** ① 관련법규의 범위 안에서 학내의 수익성이 있는 추가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이의 활성화를 지원한다.
  - ② 추가 재원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부서의 기능 활성화에 우선 활용토록 한다.
  - ③ 여유자금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대학구성원 모두에게 유리한 용도로 재투자할 수 있다.

## 제 6 장 인사 및 행정

## 제 1 절 인 사

- 제21조(교직원의 채용) ① 교육, 연구 및 사회봉사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, 교직원의 선발은 민주적이며 공개적인 전형절차에 따라 최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한다.
  - ② 신규교수 임용은 공개적으로 하며,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채용기준을 설정하여 우수한 연구업적과 교원으로서의 인격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.
  - ③ 겸임교수, 명예교수, 외국인교수, 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있어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자 에 대해서는 각각의 임용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할 수 있다.
- 제22조(교수평가) ① 매년 교수의 활동 및 그 업적을 교육, 연구, 취업, 산학협력, 봉사 등의 영역별로 평가하여 교수들의 학문적 발전을 권면하고, 충실한 학생지도를 통해 학과 및 대학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.<개정 2016.09.01.>
  - ② 평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정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2-01
제정일자	2012.07.26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5/7

③ 평가결과는 승진, 재임용,(삭제) 등 교수의 인사에 반영한다.<개정 2016.09.01.>

제23조(교수 및 연구능력 계발) ①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.

- 1. 강의계획서, 평가계획서 작성<개정 2016.09.01.>
- 2. 강의 평가 시행을 통한 우수 교원 포상 및 평가저조자 후속조치<개정 2016.09.01.>
- 3. 교수법 개발 및 새로운 교수법 도입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<개정 2016.09.01.>
- 4. 교육정보 전산화
- ② 연구능력 향상과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장려책을 시행한다.
  - 1. 연구업적 우수 교원 업적평가에 반영<개정 2016.09.01.>
  - 2. 국내 · 외 저명 학술지 논문게재 장려<개정 2016.09.01.>
  - 3. 교외 연구비 확보를 위한 지원
  - 4. 학술행사 참가 장려<개정 2016.09.01.>
  - 5. 외부 학술행사 유치 지원
- 제24조(직원의 능력향상 및 평가) ①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한다.
  - ②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근무평정을 시행하며,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인사고과 및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한다.
  - ③ 근무평정 결과는 직원의 승진과 승급, 성과급 지급 등의 기준이 된다.

### 제 2 절 행 정

- 제25조(행정조직과 업무) 행정조직 및 분장업무는 학교법인 화신학원 정관 및 본교 학칙에 의거하되 필요에 따라 직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- 제26조(부서간 업무체계) 부속기관, 직속기관 및 부설기관(이하 "부속기관 등"이라 한다) 장은 다른 부서의 동의,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, 당해 업무의 기획, 확정, 공포 또는 시행 전에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.
- 제27조(행정업무의 전산화) 업무 처리의 신속성, 적시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계 화·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종합행정전산체제를 구축한다.
- 제28조(의사결정) 본교의 의사결정은 합리성, 공개성 그리고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 영될 수 있도록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제29조(위원회 구성)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, 합리성, 민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속기관 등에 의사결정 또는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



문서번호	BSKS-3-2-01
제정일자	2012.07.26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6/7

제30조(권한위임) 행정 사무의 간소화, 행정의 능률제고,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관업무의 일부를 법령 혹은 규정에 의거하여 부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## 제 7 장 복지 후생 및 학생지도

#### 제 1 절 교직원 및 학생의 복지 후생

- 제31조(교직원 복지) 교직원들의 연구와 업무 환경 개선,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복지후생시설을 확충·운영해 나가며,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한다.
- 제32조(학생복지) 학생들의 쾌적한 면학환경, 건전한 여가선용,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학생 복지 시설을 확충·지원해 나간다.
- 제33조(학생장학제도) 우수 인재의 양성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도입·운영한다.

### 제 2 절 학생 지도

- 제34조(학생의 기본권 보장)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한다.<개정 2016.09.01.>
- 제35조(학생자치기구 지원) ①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에 입각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자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<개정 2016.09.01.>
  - ② 학생자치기구가 주관하는 학술, 문화, 체육, 봉사활동 등의 각종 자치활동을 위하여 교수 지도, 시설·설비, 예산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.
- 제36조(학생상담과 지도)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평소 상담 및 조언 등을 통해 지도하고, 적성개발과 진로·취업, 개인문제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과 지원체계를 갖추어 학생상담과 지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.<개정 2016.09.01.>
  - ① 지도교수제를 정립하여 평소 학생관리에 적극 활용한다.<개정 2016.09.01.>
  - ② 학생들의 적성,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자아의 이해와 성장을 적극 도모하고 상담활동에 활용한다.
  - ③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한다.
  - ④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진로지도나 현장교육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상담 · 지원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2-01
제정일자	2012.07.26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7/7

### 제 8 장 장 단기 발전계획

- 제37조(장·단기발전계획 수립) ① 격변하는 대내·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 대학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래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관한 장·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  - ② 장・단기 발전계획은 대학의 건학이념,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수립 되어야 한다.
  - ③ 장·단기 발전계획은 교육, 연구, 사회봉사, 학생서비스, 행정, 시설 및 공간, 재정 등 대학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.
  - ④ 장·단기 발전계획은 그 계획의 추진의지가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하되, 정기적으로 검 토하여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 9 장 보 칙

제38조(대학헌장의 보완) 대학헌장은 학교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보완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헌장은 2012년 8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헌장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헌장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헌장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